

경운대학교 대학원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의 창학정신과 교육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대학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우리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특수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제3조(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③ 각 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 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④ 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4조(설치학과 및 모집인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설치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운대학교 학칙 제94조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 등은 <별표1-1>과 같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과정은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운영한다.

③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험 및 성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과에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은 학칙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산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를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선발한다.
- ⑤ 선발방법은 특별전형으로 하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다만, 전형방법 또는 선발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⑥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담은 산업체등과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⑦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 일수, 수업연한은 대학원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 ⑧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 ⑨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 ⑩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⑪ 기타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기타 학사 관련규정 및 계약학과 계약서, 계약학과 등록금약정서 등에 따른다.

제5조(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주·야간에 실시한다.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6조(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및 복학의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지원 자격) ①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우리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은 임용전공분야와 다른 전공의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제7조의2(편입학자격)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과정 신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는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편입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 ①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②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모집요강에서 정한다.

제9조(입학전형)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각 학과와 학위과정에 따라서 실시하되 학위과정의 성적, 필답고사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 기타 서류심사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 실시한다.

제10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학칙 제21조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재입학) “삭제”

제3장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은 2년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의2(휴업일)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학점취득) ①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공통 및 전공과목 27학점 이상, 연구학점 4학점
2. 박사학위과정 : 공통 및 전공과목 36학점 이상, 연구학점 4학점

②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비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34학점(연구과목 2학점 포함)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비동일계 전공출신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이수과목을 3학점 이상 학사과정에서 이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료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매학기 수강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선이수과목 신청학점은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학점인정) ①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원의 중퇴자 또는 수료자가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 총계는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2학점,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이를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위과정 연계) 학부의 교육과정과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한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성적평가) ① 대학원의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학원은 성적등급 C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료)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정규등록을 한 자로서 제15조에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말 학위과정의 수료로 인정하며,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4학기 이상
2. 특수대학원 4학기 이상

제20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로 한다.

② 제15조에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수료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는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위기 서식은【별지서식 제2호】부터 【별지서식 제6호】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각 대학원별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종류는 <별표 3>과 같이 구분한다.

⑤ 종합시험과 학위논문 및 학위학점(비논문) 등 학위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의2(학위취소 요건)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재입학, 편입학

제21조(등록) ① 대학원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납입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규등록은 반드시 4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점 미 취득 시에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2분의 1을 납부한다.

제22조(휴학 및 복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기간, 장기해외근무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대복학대상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30일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징계제적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재입학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자의 원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26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그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27조(연구과정) ① 본 대학원에 개설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원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자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과목에 관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별지서식 제7호】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2학기)이내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장 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제28조(학생의 의무 및 학생회) ① 대학원생은 본 학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대학원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의 교육 및 학부교육을 위한 교수의 업무보조를 위해 연구조교를 두고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상벌) ① 대학원 재학 중 모범이 되고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한다.

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31조(직제)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

제32조(학과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 각 학과별로 학과주임교수와 학생 지도교수를 둔다.

② 학과주임교수는 그 학과의 교과과정운영 전반 및 연구의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의 지도, 논문지도,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③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지도교수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3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는 하나의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과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34조(임기) 대학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 규정과 타 법령에 규정된 직무 외에 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학칙,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포상, 장학,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6조(위원회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8장 보 칙

제37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서는 경운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8조(규정 또는 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사운영규정 또는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내 사전 공고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학칙의 개정이전 재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대학원 경호학과 학위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경호학과 석·박사 수여 수여학위 표기 변경에 따른 학칙 제20조 제4항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졸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일반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학 위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박사과정	인문사회	경찰행정학과	10명
	예체능	경호학과	
	소 계	2개학과	
석사과정	인문사회	경찰행정학과	30명
	자연	안경광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임상병리학과	
	공학	IT에너지학과	
	예체능	경호학과, 사회체육학과	
	소 계	8개학과	

2. 특수대학원 학과 및 입학정원

학 위	대학원명	계 열	학 과	입학정원
석사과정	산업정보 대 학 원	인문사회	경영학과, 관광학과	25명
		자연	작업치료학과	
		공학	건축환경학과	
		예체능	멀티미디어학과	
			사진영상학과	
		소 계	6개학과	
	사회복지 대 학 원	인문사회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15명
소 계		2개학과		

<별표 1-1>

학 위	대학원명	계 열	학 과 (전 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	-	-	-	-	-

<별표 2>

등 급	점 수	평 점
A+	95이상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F	69이하	0

<별표 3>

구 분	과 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종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학)	행정학박사
		경호학과(경호학)	경호안전학박사
	석사과정	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학)	행정학석사
		안경광학과(안경광학)	이학석사
		물리치료학과(물리치료학)	이학석사
		치위생학과(치위생학)	치위생학석사
		임상병리학과(임상병리학)	이학석사
		IT에너지학과(전자재료학)	공학석사
		경호학과(경호학)	경호안전학석사
		사회체육학과(체육학)	체육학석사
산업정보대학원	석사과정	경영학과(경영학)	경영학석사
		관광학과(관광경영학)	관광경영학석사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학)	이학석사
		건축환경학과(건축환경학)	공학석사
		멀티미디어학과(멀티미디어학)	미술학석사
		사진영상학과(사진영상학)	미술학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문학석사
		노인복지학과(노인복지학)	문학석사